

생금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생금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 규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과 기본 권리를 보장하며, 이를 위반 시 관련 학생의 선도와 교육, 학교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다.

제 4 조【정의】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 5 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6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7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8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9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10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3. 비행 및 범죄 예방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 제11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4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5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제14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32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 교사가 당일 수업 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일정 시간(최대 1차시 수업) 동안 분리 후 복귀 (단위학교 재량 결정)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별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지정장소(교무실, 교장실, 상담실, 학년 연구실 등) 분리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인계가 가능한 교직원 이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시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회복적 성찰문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미인정 지각 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방해받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혹은 방과후 시간)	점심시간 지도 시 식사 시간 (최소 20분) 보장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회복적 성찰문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1~3호의 지도 절차 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60분 이내)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부모를 소환하여 학생 인계 후 가정학습	회복적 성찰문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⑦ 학교의 장은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 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조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호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주의 실시 · 2회차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리고 즉시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즉시 되돌려줌
2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 흉기, 리어터, 레이저빔 기기, 모형칼, 카터칼, 컴퍼스수업시간에 필요한 교재용인 경우만 허용 등	3일 내외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리고 즉시 분리보관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분리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분리기간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호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 술, 담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리고 즉시 분리보관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분리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분리기간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4호 가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 도스뽀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리고 즉시 분리보관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분리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분리기간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⑩ 교원은 제6항제3호·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⑪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3조에 따른 조언, 제34조에 따른 상담, 제35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36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6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17조【보상】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1절 기타사항

제18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9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장 학생의 인권

제21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학생들은 혐오 표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③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말이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22조【의사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교내 자유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단,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6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24조【기본품행】

- ①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킨다.
- ②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 ③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수업시간을 준수한다.

제25조【언어생활】

- ① 친구들 사이에서 욕설을 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
- ②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

제26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학교생활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28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29조【폭력예방】

- ①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업무 담당 부서
 4. 경찰청 범죄신고 112
 5. 학교폭력신고전화 117
-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④ 학교폭력의 발생으로 인한 학교폭력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양성평등 및 존중】학생들은 성 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호자, 교직원 등 본인이 원하는 자 또는 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1조【창의적체험활동】창의적체험활동은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으로 운영하며,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특히 학생들은 특기·적성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32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33조【용의복장】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학생의 개성을 존중한다.

- ① 두발 및 복장은 자유로이 한다.
- ②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34조【소지품】

- ① 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 기기 등은 학습용도로만 사용한다.
- ②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성냥, 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공구류, 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 고대기 등)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습을 위한 준비물은 소지할 수 있다.
- ③ 학생 동의없는 소지품 검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람의 생명·신체 등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제35조 【수업시간 내】

- 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수업 진행 중에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무분별한 전자통신기기의 사용, 정상적인 수업 진행을 어렵게 하는 일련의 방해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학습활동 요구를 잘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36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 ②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⑥ 게시판에 학교행사 및 학생자치활동과 관련없는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37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가지 않는다.

제38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학생생활지도

제39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교육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지도를 우선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지도를 한다.
- ⑤ 등·하교 시 교통 및 생활안전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녹색어머니회)로 구성된 교통지도반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⑥ 안전한 교내외생활 지도를 위하여 어머니 폴리스 등을 조직 운영 할 수 있다.
- ⑦ 학생에게 소지가 금지되는 음란물, 담배 및 흡기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수업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할 때에는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 ⑧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40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41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학생지도방법】체벌은 금지하며,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제4절 정보통신

제43조【정보통신 생활】건전한 정보통신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정보통신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정보통신을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44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시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가지고 왔을 시 생긴 분실·훼손에 대하여 학생은 학교에 그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 ② 휴대전화는 학급자치회의를 통해 보관과 사용시간을 정한다. 허나 안전과 관련된 긴급 상황에 구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 ③ 수업 중 컴퓨터 및 통신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④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5절 학생자치활동

제45조【목적】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도록 한다.

제46조【운영】학생은 어린이회(학급·전교어린이회)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며, 학생의 대표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참여할 수 있다.

제47조【권리】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학생자치 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4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개정에 참여할 권리】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정·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4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학생(학생자치회)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법률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0조【자격제한】학교장은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징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제7장 포상 규정

제51조【목적】학생들에게 공정하고 다양한 각종 상을 수여하여 동기의식을 촉발하고 성취감을 북돋으며, 교내·외 활동 중에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발굴하고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2조【방침】

- ①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포상한다.
- ② 성적 우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우수 학생을 발굴 표창한다.
- ③ 교내외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교내외 포상 계획에 의한다.

제8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3조【설치】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54조【기능】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 ②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 ④ 학생선도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 ⑤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55조【구성 및 직무】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교사, 기타위원 등)
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 참고사항

위 위원 중 기타위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56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7조【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의 제척 및 기피·회피 신청 절차를 포함한다.
- ③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58조 【회의소집】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도 절차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위 ②항의 경우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59조【선도절차】선도 사항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 ① 사안 발생(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행위)
 1.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문답 등으로 사실 확인한다.
 2.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경중 판단
 - 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 현장 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한다.
 - 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즉시 대응이 필요할 경우 학생을 문제 현장으로부터 격리한다. (단, 수업 시간일 경우 지정된 교원이 별도의 공간에서 학생을 지도한다.)
 - 다)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 학교생활인권 담당 부서 교사에게 인계한다.
- ② 관찰면담(위반 경중 판단)
 1. 학교생활인권 담당 부서 교사가 대상 학생을 관찰 및 면담하여, 학교생활인권 담당 부서의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
 2.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경중 판단
 - 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대상 학생이 반성하고 있는 경우 지도·훈계로 종결한다.
 - 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위원회 회부가 필요한 경우 학교생활인권 담당 부서는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의 진행과정에서 개별 및 집단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은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상담을 권유할 수 있으며 학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③ 조사(중대 학칙 위반 사안)

1.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 학교생활인권 담당 부서에서 대상 학생을 조사한다.

2. 조사 방법

가) 대상 학생 및 관련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사실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고, 이를 검토한다. (단, 자기변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저학년의 경우 녹음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자기변론서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3.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가)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권리 고지

(1) 조사되는 사안이 위원회의 선도 및 징계 사안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2) 사안이 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나)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는 금지된다.

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대상 학생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라) 여러 학생이 관련된 사안의 경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다.

마)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수업 결손이 없도록 한다.

④1차 심의판단(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

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선도 의결 요구)

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⑦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진행

⑧ 학교장 결재

⑨ 학생 및 보호자 통보

1. 조치결정내용, 결정 이유, 위반 조항 등

2. 징계 조치 기간 및 징계 조치 기간에 학생이 해야 할 사항

3.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등

4.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한

⑩ 조치이행

제6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제62조【운영세칙】

①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반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지침(별첨)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학생의 선도

제63조【징계의 종류】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64조【징계의 방법】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총 30시간 이내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사항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담당교사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65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5일 이내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제기】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67조【재심청구】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68조【사안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개최이유,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9조【심의절차】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재심의 절차도 아래 절차를 따른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70조【징계 내용의 통보】

① 학교장은 징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71조【징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징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2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9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제73조【학교폭력의 정의】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적인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4조【기능】

- ①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별도의 규정과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처리한다.

제10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규정

제75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76조 【책무】

- ①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 교직원 등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7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제78조 【차별판단】

- 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차별로 본다.
- ②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학생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79조 【교육에 관한 권리】

-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 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장애학생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지도사, 장애학생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년도의 학교 교육 환경과 실정을 고려하여 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81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 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장 규정의 개정

제82조【개정방법】

①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 후 개정한다.

- 1. 학생: 학급회의, 설문조사 등의 방법
- 2. 학부모: 학부모회 의견, 설문조사 등의 방법
- 3. 교사: 부서별, 학년별 협의회 등의 방법

②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정한다.

제83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학생위원, 전문가 위원을 포함하여 8~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이상인 되도록 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교원의 수는 학생위원의 수 이하로 구성한다.

② 이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개정 요구 등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학교생활 인권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2/3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84조【공포 및 정보공시】

- ① 제·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교홈페이지 탑재 등의 방법으로 정보 공시한다.
- 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사실을 안내한다.
- ③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과 생김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상충될 경우, 고시 내용을 반영한 제1장 , 제2장 , 제3장, 제4장을 우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① 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정 및 공표 후 시행한다.

학생 분리 지도 보고서

학생 성명		학년 반		성별	남 / 여
분리유형	() 3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호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일시					
장소					
관련자					
분리 경위					
물리적 제지 여부 및 내용					
학교장 보고	일시:	장소:	방법:		
학부모 알림	일시:	장소:	방법:		
작성일	20 년	월	일	지도 교사	(서명)

- ※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학생 물품 분리 보관 지도 보고서

학생 성명		학년 반	성별	남 / 여
분리보관유형		1호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호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호 소지 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일시				
장소				
관련자				
분리보관 경위				
보관일			반환예정일	
학교장 보고	일시:	장소:	방법:	
학부모 알림	일시:	장소:	방법:	
작성일	20	년	월	일
	지도 교사			(서명)

※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
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물품 분리 보관 일지

번호	일시	장소	학년반	성명	분리보관 경위	지도 교사	보관일 반환예정일	학교장 보고 일시	보호자 알림 일시	반환 여부
1	2023.9.14. (월) 2교시	2-1 교실	○-○	○○○	수업시간에 2회 주의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함		(3일) 2023.09.17.(목)	2023.9.14. (월)	2023.9.14. (월)	○,×
	2023.9.14. (월) 2교시 쉬는시간	복도			안전건강위해 물품					
	2023.9.14. (월) 점심시간	운동장			학생구매불가 물품					
					학생소지금지 물품					

[참고]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의 제기 신청서

관련 학생	학번		성명	
보호자	관련 학생과의 관계		성명	
의견	※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생활지도 내용 및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 ※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이의제기 답변서

2023.09.20.(수) 학생 ○○○이 제기한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담당자: ○○○, ☎ 000-000-000)

20 년 월 일

생금초등학교장 (직인생략)